

제3장 원산지 규정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 치어,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까지의 보험비용 및 운임을 포함한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쪽 당사국이 지정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정부 당국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FOB)이란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비용(운송수단과 관계없다)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컨센서스로 인정되거나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받는 그러한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재료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하위 조립품을 포함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를 말한다.

생산자란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란 재배, 채굴, 수확, 농작,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양식, 덫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 획득의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상품소위원회란 제2.17조(상품소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를 말한다.

제3.2조

원산지 상품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 상품의 경우

- 가. 제3.3조에 규정된 대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나.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상품이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

이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2조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여겨진다.

- 가. 당사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과일, 꽃, 채소, 나무, 해초, 균류, 그리고 살아 있는 식물을 포함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 나.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 다. 당사국에서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라. 당사국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농작, 양식, 채집 또는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마.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바. 국제법에 따라 양 당사국 및 비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에서 그 당사국의 선박¹에 의하여 잡힌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 생물, 그리고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잡힌 그 밖의 상품. 다만, 어떠한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힌 어로 상품 및

¹ 이 조의 목적상, “그 당사국의 가공선박” 또는 “그 당사국의 선박” 이란 각각 다음의 가공선박이나 선박을 말한다.

- 1) 그 당사국에 등록된 것, 그리고
- 2) 그 당사국의 국기를 제양할 자격이 있는 것

그 밖의 해양생물의 경우,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그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개발할 권리²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밖의 상품의 경우,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를 개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사. 국제법에 따라 공해에서 그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 아. 그 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바호 또는 사호에 연급된 상품으로만 가공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 자. 다음의 상품
 - 1) 당사국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 2) 당사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부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 차. 가호부터 자호까지에 연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당사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4조

누적

1.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하나 또는 복수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은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로 여겨진다.

²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이 호의 “개발할 권리”는 당사국과 연안국 간의 모든 협정 또는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연안국의 어로자원에 대한 그러한 접근권을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생산이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에 충분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후 이 조의 검토를 개시한다. 이 검토는 양 당사국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생산 및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에 제1항의 누적 적용의 확대를 고려할 것이다. 양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검토의 개시일부터 1년 내에 그 검토를 마친다.

제3.5조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1. 부속서 3-가에 명시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공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산정된다.

가. 간접법/공제법 공식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또는

나. 직접법/집적법 공식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 + \text{직접노무비} + \text{직접경비} + \text{이윤} + \text{그밖의비용}}{\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본선인도가격(FOB)”은 제3.1조에 정의된 본선인도가격이다.

“원산지재료가치(VOM)”는 획득되거나 자가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생산품의 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직접 노무비”는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을 포함한다. 그리고

“직접 경비”는 총간접비용이다.

2. 이 장에 따른 상품의 가치는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산정된다.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되는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된다.

3.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입된 재료의 경우, 수입 시 재료의 운임보험료포함가격, 그리고

나. 당사국 내에서 획득된 재료의 경우,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 가능한 지불된 가격 또는 지불해야 하는 가격

4.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된다.

5. 다음의 비용은 비원산지 재료 또는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다.

가. 상품을 생산자에게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나. 면제, 환급 또는 달리 회수되는 관세 외의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그리고

- 다.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폐기물과 유출물의 비용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열거된 비용을 알 수 없거나 증거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비용에 대한 차감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6조 최소 공정 및 가공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수행된 다음의 공정은 그 상품에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여겨진다.

- 가. 운송 또는 보관의 목적상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 나. 운송 또는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 또는 전시
- 다. 감별, 체질, 선별, 분류, 연마, 절단, 쪼개기, 분쇄,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로 구성되는 단순한³ 가공
- 라. 마크, 라벨, 로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마.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 바. 생산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³ 이 조의 목적상, “단순한” 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 사. 동물의 도살⁴
- 아.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자. 단순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차.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또는
- 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에 연급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제3.7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가에 따른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코드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다. 또는
-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코드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은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⁴ 이 조의 목적상, “도살” 이란 동물의 단순 도살을 말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모든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제3.8조 포장과 포장재료 및 용기의 취급

1. 상품의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2.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그 상품은

가. 제3.2조가호에 따라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한다.

나. 제3.2조나호에 따라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어야 한다. 또는

다.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 요건의 적용대상이어야 한다.

3.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의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그 상품의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3.9조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

1.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의 일부로 여겨지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

나 가공 공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가.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행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가.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행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제3.10조

간접재료

1. 간접재료는 그것이 생산된 장소에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며, 그 가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그 상품 생산자의 기록에 등록된 비용이다.

2. 이 조의 목적상, “간접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다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않는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이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 및 에너지

-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상품
-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그리고 안전장비 및 보급품
-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사. 촉매제 및 용제, 그리고
-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어 그 생산의 일부가 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3.11조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는 각각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에 따라, 또는 혼합된 경우 수출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서 인정되고 그 회계연도 내내 사용되어야 할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에 따라 결정된다.

제3.12조

중간재⁵

1.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후속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후속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그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당사국 내의 생산 과정에만 적용된다.

2. 비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후속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 가. 후속 생산된 상품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상, 그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그리고,
 - 나. 후속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상, 그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가 고려된다.

제3.13조

자격 단위

1. 이 장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때 기본 단위로 여겨지는 특정 상품이다.
2. 탁송물이 단일 세번에 분류된 여러 개의 동일한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상품이 개별적으로 고려된다.

제3.14조

상품의 세트

1. 각 당사국은 상품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해석에 관한 통칙 3을 적용한 결과로 세트로 분류되는 경우, 세트 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만 그 세트가 원산지 상품이 되도록 규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본선인도가격(FOB)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품의 세트는 원산지 상품이다.

제3.15조

특정 상품의 취급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은 한쪽 당사국에서 수출되고 이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한국의 영역 밖에 그리고 한반도에 소재한 지역에서 생산 가공 또는 공정이 수행되었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부속서 3-나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3.16조

통과 및 환적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규정한다.

- 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후속 생산 또는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
-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상거래 또는 자유로운 유통에 들어간 경우

2.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양 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이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서류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 나. 제1항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제2절

원산지 절차

제3.17조
원산지 증명

1. 다음은 원산지 증명으로 여겨진다.
 - 가. 제3.18조 제1항가호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또는
 - 나. 제3.18조 제1항나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2. 제1항나호에 명시된 원산지 신고서는 한쪽 당사국이 제3.30조에 언급된 연락처를 통하여 자국의 이행 의사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함으로써 각국의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이행된다.
3.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4.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이 작성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제3.18조
원산지 신고서

1. 제3.17조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3.19조의 의미에서의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제3.17조 제2항을 조건으로,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원산지 신고서는

- 가. 부속서 3-다에 따라 작성된다.
- 나. 영어로 작성된다.
- 다.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증명인의 이름 및 서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 라.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날짜를 포함한다.

제3.19조

인증수출자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인증수출자로서 이 협정에 따라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에 대한 인증을 규정한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보증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등록되어 있다.
- 나. 그 수출자는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
- 다.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만족스러운 수준의 수출 경험을 갖추고 있다.
- 라.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위험관리에 따라 측정된 우수한 준수 기록을 갖추고 있다.
- 마. 그 수출자는, 무역업자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상품의 원산지 지위 및 제3.25조에 따른 검증에 협조하고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자의 준비도를 확인하는 생산자의 신고서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바.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잘 정리된 장부 및 기록 유지 체제를 갖추고 있다.

2.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 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나.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증번호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부여된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수출자에 대한 정보⁶를 안전한 웹사이트나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3. 제2항다호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접근 가능하고 위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국의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그 항에 언급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4. 인증수출자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가. 제3.24조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인증의 사용을 감독하는 목적상 기록 및 장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나. 인증수출자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허용된 상품으로서, 그 신고서 작성 시 관련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다.

다. 오용을 포함하여, 작성된 모든 원산지 신고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

⁶ 정보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 인증일과 적용 가능한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의 만료일, 그리고 최소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류 수준에서, 인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목록을 포함한다.

리고

- 라. 나호에 언급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변경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신속하게 알린다.

5.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의 검증을 포함하여 인증의 사용을 감독하고, 제1항에 언급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한다.

제3.20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진술서를 세관 신고 시 작성한다.

- 나. 가호에 언급된 신고 시에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한다. 그리고

- 다. 수입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을 수입 당사국에 제공한다.

2. 수입자가 이 장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는 거부된다.

3.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적절한 경우, 수입자에게 상품이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21조

수입 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각 당사국은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수입 당사국에 다음을 제시하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로 납부한 모든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원산지 증명, 그리고

나.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서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를 수입 시 그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22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증명은 다음의 경우 요구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 또는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우편으로 송부된 상품으로서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

다만, 그 수입은 원산지 증명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제3.23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 상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없는 경우, 상품의 수입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상품의 수입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사실상 상응한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 동일한 원산지 증명상에 다수의 품목이 신고된 경우, 열거된 품목들 중 하나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그 원산지 증명에 열거된 나머지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및 통관이 영향을 받거나 지연되지 않는다.

제3.24조 기록 유지 요건

- 제3.25조에 따른 검증 절차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을 작성하고 서명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원산지 증명이 작성된 날부터 최소 3년 동안 증빙 기록을 유지한다.
-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한다.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여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기록을 유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제3.25조⁷ 검증

-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수단으로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⁷ 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은 검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3.30조에 따라 지정된 자국의 연락처 중 하나를 자국의 수출된 상품의 검증을 위한 단일 연락처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나. 제3.17조제1항나호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
- 라. 시설 및 상품의 생산 과정을 시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한 원산지를 언급하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검증,⁸ 또는
-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절차

2. 수입 당사국은

- 가. 제1항나호의 목적상, 서면 요청을 원산지 증명의 사본 및 그 요청의 이유와 함께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송부한다.
- 나. 제1항다호의 목적상, 서면 요청을 원산지 증명의 사본 및 그 요청의 이유와 함께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송부한다. 그리고
- 다. 제1항라호의 목적상, 방문이 이루어질 사업장의 수출자나 생산자, 그리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서면 동의를 요청하고, 방문에 대하여 제안된 날짜 및 장소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적을 적시한다.

3. 수입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은 수입 당사국과 수출 당사국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 수행될 수 있다.

⁸ 이 호에 따른 검증 방문은 다호에 따른 검증 절차가 수행된 후에만 이루어진다.

4. 제1항가호부터 제1항라호까지의 검증 절차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은
- 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가호부터 제1항다호까지에 따른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에서 90일 사이에 응답하도록 허용한다.
- 나.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라호에 따른 검증 방문에 대한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내에 그 요청을 동의 또는 거부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 다. 필요한 정보의 접수일부터 90일에서 180일 내에 검증 사례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5. 제1항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은 그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검증 결과를 그 사유와 함께 서면 통보한다.
6.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은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나, 그러한 반출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26조

비밀 유지

1. 이 장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3.25조에 따라 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기밀 사업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2. 양 당사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합의에 따라, 기밀 정보는 원산지 결정의 운영 및 집행을 목적으로만 한쪽 당사국의 당국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공개될 수 있다.

제3.27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1.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 장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결정할 수 있고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 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 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3.25조에 따른 서면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 다. 제3.25조에 따른 검증 방문 요청이 거부된 경우
3.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결정에 대한 사유를 포함하여 그 결정을 제공한다.

제3.28조

제3자 송장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송장이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제3.29조

통과 및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협정의 발효일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제3.16조에 따라 그 당사국으로 운송되고 있었던 경우, 또는

나. 그 당사국으로 수입되지 않았던 경우

다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80일 내에 제3.20조에 따른 유효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30조

연락처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0일 내에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연락처를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그 하나 이상의 연락처에 대한 연락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연락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두주

1. 제3.2조에 따라, 이 부속서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을 규정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2조가호 및 제3.2조나호에 규정된 대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그리고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의 원산지 기준은 모든 세번에 적용된다.
3. 이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
 - 가. “부”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부를 말한다.
 - 나.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 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 라.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4.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상품이 그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그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5.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6. 세번변경 규정이 다른 세번으로부터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그 배제는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7. 일부의 경우, 제1열의 기재사항이 ‘ex’로 시작하면, 이는 제2열의 규정이 제1열에 기술된 그 류 또는 호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란 제3.5조에 따른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말한다.

나. “2단위 세변변경기준(CC)”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2단위 수준에서 세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CT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4단위 수준에서 세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라. “6단위 세변변경기준(CTS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6단위 수준에서 세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마. “완전생산기준(WO)”이란 제3.3조에 규정된 대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을 말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한 규정이 완전생산기준(WO)인 경우, 그 상품은 제3.2조나호에 따라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생산됨으로써,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기 위한 요건을 여전히 충족할 수 있다. 그리고

바. “화학반응(CR)”이란 화학반응 규정을 말한다. 화학반응이 당사국에서 발생한 경우, 그 화학반응의 산물인 모든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화학반응”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문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문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문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문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이다. 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

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9.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에 기초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에 기초한 원산지 규정,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 중에서의 선택을 규정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수출자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규정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10. 이 부속서는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년판(이하 이 부속서에서 “HS 2022” 라 한다)에 기초한다.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1류	완전생산기준
제2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
ex 제3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1	완전생산기준
0304.41 – 0304.46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0304.47 – 0304.49	4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5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0304.71 – 0304.7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0304.74	4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75 – 0304.8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0305.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0305.3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0305.41 – 0305.4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0305.51 – 0305.5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0305.61	4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0305.63	4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4 – 0305.7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0309.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4류	완전생산기준
제5류	완전생산기준
제6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7류	완전생산기준
07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0711	2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	2단위 세번변경기준
0713	2단위 세번변경기준
0714	2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ex 제8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0801.3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0802.1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0802.2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0802.3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0802.4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0802.5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0802.6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0813.5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0814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9류	완전생산기준
0901.12 – 0901.90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0904.12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06.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10.91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10.9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제10류	완전생산기준
ex 제11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1101	완전생산기준
1105.20	완전생산기준
1107.20	완전생산기준
1109	완전생산기준
ex 제12류	완전생산기준
12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1209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13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9	2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제14류	완전생산기준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ex 제15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15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1511.10	완전생산기준
1513.21	완전생산기준
1516 – 151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1520 – 152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16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1602.32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3 – 1605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7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18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1801 – 18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18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19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1901 – 19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0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008.99	2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1212.21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1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10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2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2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204.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2204.21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2204.22호 또는 제2204.29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22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2204.21호 또는 제2204.29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29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2204.21호 또는 제2204.22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30	2단위 세번변경기준
2205 – 22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2207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23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301.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3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303.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308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4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401	완전생산기준
2402.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25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01 – 25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25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504	2단위 세번변경기준
2506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26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27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710.12 – 2710.1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710.91 – 2710.9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8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2801.20 – 2801.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06.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1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15.11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2815.12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15.12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2815.11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5.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18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26.1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26.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27.31 – 2827.3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27.3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27.59 – 2827.6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33.1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34.10 – 2834.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35.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35.26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35.3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36.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2836.9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36.9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39.1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40.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42.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849.10 – 2849.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9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01 – 29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2903.15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03.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03.41 – 2903.6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03.6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03.77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03.7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05.1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05.3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05.45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29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2910.50 – 2910.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2915.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15.31 – 2915.3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15.3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15.70 – 2915.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16.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2916.19 – 2916.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16.3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16.3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17.1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17.36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18.12 – 2918.1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18.9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2921.2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21.46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21.5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22.4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292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32.96 – 2932.9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33.1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33.34 – 2933.3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33.5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33.6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33.92 – 2933.9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2934.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0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3006.92	완전생산기준
ex 제31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3105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3102호부터 제31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2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3202.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3204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3206.11 – 3206.19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3102호부터 제31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20 – 3206.4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제33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4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3402.31 – 3402.4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3402.4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5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3501 – 350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3505.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제36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제37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8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3808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38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382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3825	완전생산기준
382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ex 제39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39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40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400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400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401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41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4101 – 41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42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43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43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44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4410 – 44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5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46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4601.29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401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4601.94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401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4602.19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401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47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4707	완전생산기준
ex 제48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4801 – 48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4814.19 – 4814.5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4805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4808.4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48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4816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제49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50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5004 – 50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5006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004호 또는 제5005호의 것은 제외한다)
50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51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 – 51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	2단위 세번변경기준
5109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ex 제52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1 – 52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5207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205호 또는 제5206호의 것은 제외한다)
ex 제53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 – 5305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54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 – 54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55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 – 5507	2단위 세번변경기준
5511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9호 또는 제5510호의 것은 제외한다)
5513.11 – 5513.19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513.31 – 5513.39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514.11 – 5514.19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514.3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516.11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516.13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516.21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516.23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516.31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5516.33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516.41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516.43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516.91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516.93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ex 제56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5608.19 – 560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56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7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8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9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60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61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62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63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6306.22 – 6306.3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7.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64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6406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제65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제66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제67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제68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제69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ex 제70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7008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003호부터 제70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71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71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10 – 7102.2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7102.2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7102.3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7102.3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7103.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7103.91 – 7103.9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7104.91 – 7104.9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7106 – 7107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7108.11 – 7108.1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7108.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7109 – 711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7112	완전생산기준
ex 제72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7207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06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07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9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08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721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08호 또는 제720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1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08호 또는 제720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2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08호부터 제72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4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3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5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3호 또는 제7214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6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08호부터 제721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31 – 7219.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6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25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8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27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3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74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75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76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7605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78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8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79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9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ex 제80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0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81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1.97	6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7	6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91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8103.9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8105.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81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8.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31 – 8109.39	6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811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13	6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22	6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3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4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52	6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61	6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9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2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83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1.10 – 8301.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84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8401.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8.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8.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91 – 8411.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91 – 8413.9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8418.91 – 8418.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0.91 – 8420.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91 – 8421.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5 – 843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6.91 – 8436.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9.91 – 8439.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2.40 – 8442.5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8443.91 – 8443.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4 – 844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20 – 8448.5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6 – 846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91 – 8467.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0 – 847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8479.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91 – 8482.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85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01 – 85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04.21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8504.22호 또는 제8504.23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04.22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8504.21호 또는 제8504.23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04.23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8504.21호 또는 제8504.22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04.31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8504.32호부터 제8504.3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04.32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8504.31호, 제8504.33호 또는 제8504.34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04.33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8504.31호, 제8504.32호 또는 제8504.34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8504.34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8504.31호부터 제8504.33호 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0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0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07.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0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08.7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09.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1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1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1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1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1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1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1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17.71 – 8517.7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1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19 – 85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3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853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3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3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34 – 853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39.5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39.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40.91 – 8540.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41.42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8541.43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41.43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8541.42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4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4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43.40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8539.52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43.70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8539.52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4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44 – 854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8549	완전생산기준
제86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87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3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8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89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90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01 – 90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0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0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06.91 – 9006.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07.91 – 9007.9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0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1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1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1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1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1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1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1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1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18 – 90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2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902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2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2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2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2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2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29.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3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3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32.89 – 903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03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91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111.10 – 9111.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제92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제93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94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9406.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제95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96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기준
9613.10 – 9613.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제97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

부속서 3-나

특정 상품의 취급

1. 원산지 결정

- 가. 수출을 위하여 재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제3.6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품으로 재수입되고, 제6항에 언급된 목록과 후속 개정에 반영된, 제3.15조에 언급된 “특정 상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⁹는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최종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나.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장의 관련 규정은 제3.15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2.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 가. 한쪽 당사국이 제3.15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양과 조건하에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의 증가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그러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간 동안 그러한 상품에 대한 제3.15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정지한다.
- 나. 가호에 따라 제3.15조의 적용을 정지하려는 한쪽 당사국은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2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제안된 정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⁹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란 운송비를 포함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역외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및 누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다. 가호에 언급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정지 조치를 한 당사국이 그 정지가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어야 한다.

라.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가호에 따른 제3.15조의 적용의 정지는 다른 쪽 당사국에 2개월 전 사전통보 없이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지가 발효되기 전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당사국이 가호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관련 당사국은 제3.15조의 적용을 다음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1)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없다.

2) 사전 협의에 대한 의무가 없다.

3) 정지의 기간 또는 빈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3. 연례 검토

가. 양 당사국은 상품소위원회에서 제3.15조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 수출 당사국은 이전 일년 동안 수입 당사국에 대한 제6항에 열거된 각 상품의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 제3.15조의 운영에 대한 간략한 사실보고서를 상품소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2) 수입 당사국은 상품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에 대한 거부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정보 및 그 거부의 사유를 제출한다.

- 나. 상품소위원회는 제3.15조의 이행과 운영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가 정보를 수출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 다. 상품소위원회는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품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권고를 할 수 있다.

4.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제7.2조(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를 포함하여 이 협정상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분쟁해결

제17장(분쟁해결)은 이 부속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않는다.

6. 상품 목록

다음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이다. 한쪽 당사국은 이 항에 언급된 목록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이를 신의성실하게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채택된다.

번호	HS 2002	품목명
1	2923.90	- 기타
2	3923.30	-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3926.90	- 기타
4	4016.99	-- 기타
5	4202.11	-- 외부 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6	4202.12	--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7	4202.21	-- 외부 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8	4202.22	--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9	4202.29	-- 기타

번호	HS 2002	품목명
10	4202.92	--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
11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한 것
12	5810.92	-- 인조섬유제의 것
13	6108.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4	6115.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5	6117.10	- 쇼울·스카프·머플러·만탈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6	6117.20	- 넥타이류
17	6201.13	-- 인조섬유제의 것
18	6201.92	-- 면제의 것
19	6201.93	-- 인조섬유제의 것
20	6202.12	-- 면제의 것
21	6202.13	-- 인조섬유제의 것
22	6202.92	-- 면제의 것
23	6202.93	-- 인조섬유제의 것
24	6203.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5	6204.6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6	6205.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7	6211.42	-- 면제의 것
28	6211.43	-- 인조섬유제의 것
29	6212.90	- 기타
30	6213.1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31	6213.20	- 면제의 것
32	6213.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3	6214.1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34	6214.20	- 양모제 또는 섬수모제의 것
35	6214.30	- 합성섬유제의 것
36	6214.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7	6216.00	장갑류
38	6303.92	- 합성섬유제의 것
39	6402.19	-- 기타
40	6402.20	- 신발(갑피끈을 플릭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에 한한다)
41	6402.30	- 기타 신발(보호용금속 토탈을 넣은 것에 한한다)
42	6402.91	-- 발목을 덮는 것

번호	HS 2002	품목명
43	6403.19	-- 기타
44	6403.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45	6403.30	- 신발류(베이스나 플래트폼 나무로 된 것에 한하며 안창 또는 보호용 금속 토탭을 넣은 것은 제외한다)
46	6403.51	-- 발목을 덮는 것
47	6403.59	-- 기타
48	6403.91	-- 발목을 덮는 것
49	6404.11	-- 스포츠용 신발류, 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50	6405.10	- 갑피가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인 것
51	6405.20	-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52	6405.90	- 기타
53	6406.99	-- 기타 재료제의 것
54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55	7419.99	-- 기타
56	8215.91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57	8302.3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8	8421.21	--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
59	8424.90	- 부분품
60	8473.10	-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61	8480.71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62	8504.90	- 부분품
63	8512.20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64	8512.90	- 부분품
65	8517.90	- 부분품
66	8529.90	- 기타
67	8534.00	인쇄회로
68	8536.30	-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69	8536.50	- 기타의 개폐기
70	8539.29	-- 기타
71	8539.39	-- 기타
72	8540.91	-- 음극선관의 것

번호	HS 2002	품목명
73	8543.89	-- 기타
74	8544.41	-- 접속자가 부착한 전선
75	8708.99	-- 기타
76	8714.99	-- 기타
77	9013.80	- 기타의 기기
78	9101.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9	9101.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0	9101.19	-- 기타
81	9101.21	-- 자동권식의 것
82	9101.29	-- 기타
83	9101.91	-- 전기구동식의 것
84	9102.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5	9102.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6	9102.21	-- 자동권식의 것
87	9102.91	-- 전기구동식의 것
88	9102.99	-- 기타
89	9111.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90	9111.20	-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 여부를 불문한다)
91	9111.80	- 기타의 케이스
92	9111.90	- 부분품
93	9112.90	- 부분품
94	9113.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95	9113.20	-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 여부를 불문한다)
96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97	9114.20	- 시계용 보석
98	9114.30	- 문자판
99	9114.40	- 지판과 브리지
100	9404.90	- 기타

부속서 3-다
원산지 신고서의 최소 정보 요건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2.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4. 상품명 및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코드(6단위)
5.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 번호
6. 고유 참조번호
7. 원산지 결정 기준
8.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이 장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그리고
9. 상품의 수량